

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서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0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8.

발의자 : 서천호 · 박덕흠 · 서명옥  
이만희 · 최보윤 · 정성국  
정점식 · 서지영 · 조은희  
박충권 · 김용태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 · 재산세 ·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어업인 용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· 제3항, 제10조제1항,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).



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67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



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로 한다.	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